



제438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군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황 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483호)

2026. 8.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공 춘 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황회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5. 3. 16.
3. 회부연월일 : 2025. 3.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안보와 국토 방위라는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군인은 잦은 부대 이동 및 격오지 근무 등 특수한 복무 환경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주거 및 생활 환경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그 가족인 군 가족 역시 비자발적인 이주에 따른 경력 단절, 자녀 교육 환경의 불안정, 지역사회와의 단절 등 심각한 생활상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음. 이러한 복지 문제는 군인의 복무 만족도와 사기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국가 안보 역량을 저해하는 요인이 됨.

현행법은 군인 및 군인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인 및 군인 가족을 대상으로 주거지원, 보육·교육 지원 등 각종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지원들이 분절적으로 제공됨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 및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어, 이를 통합 제공하는 별도의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군인의 헌신에 합당하게 보답하고 군 가족의 안정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며 군인의 복무 전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거지원, 생활편의 증진, 보육·교육 지원, 지역적응 지원 등 각종 지원을 통합 제공하는 군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군인·군인가족에 대한 지원 및 그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행정의 효율성 및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신설).

Ⅲ. 검토의견

1. 군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이 군인 및 군인가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군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센터의 주요 업무는 ① 군인가족의 생활편의 증진 및 주거지원, ②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 개선 및 보육·교육 지원, ③ 군인가족의 지역적응 지원 및 군인가족 간 교류·협력 촉진, ④ 그 밖에 군인 및 군인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임(안 제18조 신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18조(군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 및 군인가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군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인가족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군인가족의 생활편의 증진 및 주거지원 2.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 개선 및 보육·교육 지원 3. 군인가족의 지역적응 지원 및 군인가족 간 교류·협력 촉진 4. 그 밖에 군인 및 군인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군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군인복지기본법」을 중심으로 여러 법령에서 다음 [표]와 같이 군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주거지원, 생활편의 증진, 보육·교육 지원, 지역적응 지원 등 각종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각종 복지지원 근거 규정]

구분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상 관계 조문	
	법령	행정규칙 등
군인가족 생활편의 증진	군인복지기본법 제14조(군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 ‘생활편의’가 복지시설, 교통편의, 생필품 지원 등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내용 구체화 필요	(국방부) 군 복지시설 및 복지기금 관리 운용 훈령
군인가족 주거지원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군 숙소 지원 등), 제10조(주택의 우선공급 등)	(국방부)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군인 자녀 교육여건 개선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의2(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등) 초·중등교육법 제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교육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군인 자녀 보육·교육 지원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보육 및 교육 지원)	(국방부) 군 어린이집 관리·운영 훈령 (국방부) 군인 자녀 기숙사 운영 훈령

구분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상 관계 조문	
	법령	행정규칙 등
군인가족 지역적응 지원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 군인가족은 지역주민이므로 지역적응 지원은 지자체에서 담당할 사무로 판단됨.	(광역시자체) 강원특별자치도 군의 우리도민운동 활성화 및 군인가족 지원 조례 (기초지자체) 포천시 거주 군인 및 군인 가족 지원 조례 (기초지자체) 평택시 거주 군인 및 군인 가족 지원 조례
군인가족 간 교류·협력 촉진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	(가족부)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공동육아나눔터의 시설기준 등)
그 밖에 군인 및 군인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군인복지기본법 제3조(국가의 책무)	-

자료: 국방부 보건복지관

□ 그런데 위와 같은 지원들이 법령·훈령·조례 등에 산재되어 규정되어 있고,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들이 국방부, 각 군, 각급 부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으로 분절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실정임.

또한, 군인과 군인 가족들은 각종 지원의 대상·담당 기관·신청요건 등을 일일이 확인하여 각 기관으로 일일이 문의하거나 신청함에 따라 접근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음.

이로 인해 대상자들이 해당 지원제도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에도 각종 복지지원 사항들을 통합하여 안내하는 기관이 없어 수요자 중심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각종 지원을 통합 제공하는 군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서비스 제공 및 접근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한편, 개정안은 군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군인가족지원센터가 국방부에 두는 하부 조직인지, 각 군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부대나 지역에 설치하는 조직인지 다소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이러한 측면에서 군인가족지원센터의 조직 성격 및 설치 범위 등에 대하여는 기존 지원조직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효과적인 지원전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음.

□ 관계 부처 의견을 살펴보면,

국방부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군인가족지원센터의 수행 업무는 「군인복지기본법」, 「아이돌봄 지원법」 등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하여 세부사항이 행정규칙 등으로 구체화되어 있고, 군인가족지원센터 설립·운영사항이 「군인복지기본법」에서 다루고 있는 군인복지 증진 업무의 일환으로 이미 법률적 근거가 있으며, 그 근거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법규에서 구체

화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법률을 개정할 실익이 높지 않다는
신중검토 입장임.

기획예산처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타 기관이나 지자체,
민간과 유사·중복되는 기능은 통폐합 또는 조정하고, 신설기관은
중점 점검하는 것이 정부 기조이고, 군인가족지원센터의 업무를
이미 정부부처와 지자체에서 수행 중이므로 군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두는 것은 정부조직의 생산성·효율성 제고 측면
에서 신중검토 필요하다고 판단됨.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보조
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설치는 대통령령(직제)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개정안의 문구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으나, 군인가족지원센터가
국방부에 두는 하부조직이라면, 설치 근거를 개별 법률에 두는 것
보다 대통령령(직제)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조직의 효율적·
체계적 관리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안 제18조 ‘조건부 삭
제’ 의견임.

- 따라서 개정안에 대하여는 특수한 복무 환경으로 인한 군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통합적인 지원서비스체계를 구축하려는 입법
취지와 함께 조직·설치의 구체화 필요성과 함께 관계부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법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임.

문 의 처
02)6788-5304